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장 입·퇴소 관리

제01조(계약목적) 입소계약의 목적은 입소자에게 제공 되어지는 서비스의 제공기준 및 비용에 대한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를 최소화 하는 데 있으며 나아가 입소자가 보다 안정된 상태에서 지역사회 또는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제02조(계약기간 및 계약해제) 연간이용일수의 제한은 없으며 보호자와의 상담 후 장기요양등급유효기간에 준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입소자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 가정으로의 복귀, 타 시설로의 전원, 병원으로의 후송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대표 및 시설장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 면담하고 계약연장의사를 확인하며 타 시설로의 전원 또는 연계를 원할 경우에는 원활히 전원·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입소자의 입소비납입이 2회 이상 연체되었을 경우에는 입소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03조(이용료 및 기타부담액) ①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등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산정한다. ② 본인일부부담금 외 비급여 항목으로 식재료비, 촉탁진료비등의 비용을 수납할 수 있으며 이는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용한다. ③ 장기요양 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이용자 또는 보호자간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를 산정하여 비용을 부담한다. ※ 해마다 변동사항은 첨부자료를 통하여 보관한다.

1. 시설의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비용 및 비급여 비용에 준하며,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을 통하여 평가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기준>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시설급여(1일)

시설급여구분		1등급	2등급	3~5등급
요양급여	노인전문요양시설 (구 노인복지법) 노인요양시설(개정법)	고시비용	고시비용	고시비용
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			
	식재료비 · 간식비			
	병원비 · 약재비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시설급여
일반	20%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회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정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 에 관한 고시 해당자)	10%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A.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a)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

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b) 세부기준

-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B.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다음의 요건의 경우(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04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란 법적으로 대리인을 칭하므로, 수급자가 현 시설에 입소할 경우 기존에 알고 있던 질병과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을 입소할 시설에 정확하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대표 및 시설장은 입소계약 시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에게 입·퇴소사항 및 입소비용, 입소 후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한 권리 및 의무에 대하여 설명하고 서명, 날인토록 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의 신원인수는 보호자가 한다. 신원인수를 보호자가 부득이하게 인수치 못 할 경우 보호자가 위임한 자로 할 수 있다. 이용자 사망시 대리

인(보호자)은 24시간 이내에 시신을 인수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이용 전 이용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3. 이용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하며,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용발생 시).

5. 이용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 신원인수인의 변경

① 시설은 입소 수급자에 대하여 그의 신원인수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와 파산선고 등 신원인수인으로 서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소 수급자(보호자)에게 신원인수인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입소 수급자(보호자)은 전항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즉시 시설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신원인수인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05조(서비스의 내용 및 서비스에 따른 비용부담) 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건강관리, 요양, 인지기능증진서비스, 여가활동서비스, 지역사회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 기능회복훈련, 급식 등의 총체적인 노인돌봄서비스가 진행되며, 입소자의 보호 및 관리에 따른 월 수납비용외에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프로그램, 행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할 수 있다.